
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배포 일시		2013. 9. 24(화) 09:00		
담당 부서	기 재 부	예산실 지방재정팀	과장 이용욱, 사무관 오지훈 (☎ 044-215-7570, 7571)	
	기 재 부	세제실 조세분석과	과장 김경희, 사무관 조용래 (☎ 044-215-4310, 4311)	
	안 행 부	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	과장 이용철, 사무관 서은주 (☎ 02-2100-4102, 4104)	
	복 지 부	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	과장 장호연, 서기관 최경일 (☎ 02-2023-7210, 7203)	
보 도 일 시		2013. 9. 26(목) 조간		

제목 :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

-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, 중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

-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 및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,
 -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,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9.24 일 「중앙-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」 을 확정· 발표함
- 「중앙-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」 의 주요 내용은
 - ① 8.28일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
 - ②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(15년까지 11%),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

제 개편

- ③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 :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%p 인상, 정신·장애인·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

I. 기본 원칙

- ① 지방재정의 현안소요와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
 - 취득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, 보육 부담 완화 등 시급한 현안 소요에 우선 대응
 - 복지소요 증가,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조정 추진
- ②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
 - 현재 취득세 중심에서 신장성이 높은 지방소비세·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여 자체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
- ③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방 세출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
 - 지역밀착형 경제분야 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
 - 지역밀착형 복지분야 보조사업 중 일부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용 도모

Ⅱ. 중앙·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

1 지방재정 소요

①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

-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*(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)에 따른 세수 감소분: 연간 2.4조원(지방교육세 포함)

*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

※ 기준거래량 88.2만건(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된 '06년부터 '12년까지의 거래량 중 최고('06년) 및 최저('12년)를 제외한 평균치)

< 취득세율 인하 내역 >

구 분	~6억원	6~9억원	9억원
현 행	2%		4%
↓			
변 경	1%	2%	3%

②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

- 보육대상 확대(선별적→전계층)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대
- 기초연금, 개별급여 등 일반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 확대 전망

③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

- 분권교부세 사업 중 장애인·정신·양로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수요 편중*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 가중

*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.6% 수준(1,955명 중 1,752명)

①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추진

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%p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('14년 기준 2.4조원)

* 현재 5% → '14년 8%(+1.2조원) → '15년 11%(+2.6조원)
(향후 '14~'23년간 연평균 3.2조원)

**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액 전액 포함

- 최근 세입결손 등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원한 것임

②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('15년 기준 1.1조원)

-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,

- 우선, 법인세분에 대해 세액공제·감면 정비 추진

* '1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'14.1.1일 시행할 경우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'15년 발생

③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(향후 10년간 추계시 연평균 1.1조원)

* '08~'12년 연평균 증가율: 부가가치세 6.2%, 소득세+법인세 5.0%,
취득세(주택 유상거래분) △0.1%

-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향후 복지소요 등에 활용

② 지방의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

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%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('14년 기준 0.8조원)

-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%인 점을 감안하면 10%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% 수준으로 확대
- 또한, 금년 예비비 등을 포함한 국비의 지원 수준*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

* ('13년) 예비비·특교 추가지원분 : +5,607억원(보육료 실효보조율 : 49→57%, +8%)

- 이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

②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*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·장애인·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('15년 기준 0.5조원)

* 충북 음성 꽃동네의 타 지역 주민입소비율 89.6% 수준(1,955명 중 1,752명)

- 분권교부세 3개 사업 환원에도 분권교부세 현행율을 유지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초과 부담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

*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'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

③ 아울러, 지방소비세 전환을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'15년에 완전히 발생함에 따라 '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('14년 1.2조원)

**<붙임> 향후 10년간('14 ~ '23년) 총 지방재정 확충(추정) :
연평균 5.0조원**

◇ 지방재정 소요

○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및 복지부담 완화

-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
- 영유아보육 및 일반 복지부담 완화
- 분권교부세 3개 사업(장애인·정신·양로) 부담 완화

◇ 재원대책 및 기능조정 : 5.0조원

○ 지방세제 개편 : 4.6조원

-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(3%p+3%p) : 2.4조원
-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: 1.1조원
- 지방소비세·지방소득세 신장성 효과 : 1.1조원

○ 보조사업 확대 등 예산지원 : 1.5조원

- 보육 보조율 인상(10%p) : 0.8조원
- 분권교부세 3개 사업(장애인·정신·양로) 국고 환원 : 0.6조원
- '14년 한시 예비비 1.2조원 : 10년간 연평균 0.1조원 지원 효과

○ 기능 조정 : △1.1조원(잠정)